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

시행 : 2024. 03. 01.

제36조(논문심사)

-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
-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,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.

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시행 : 2023. 09. 01.

제25조(논문심사의 결정)

-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/3이상,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/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9조(연구윤리)

- 연구 관련자(교원, 연구원, 대학원생, 학위지도교수,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)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 취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일반대학원내규

시행일 : 2024. 03. 01.

제59조(학위청구논문의 심사)

- 학위청구논문의 심사(이하 "논문심사"라 한다)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.
-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소정 기일 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.

제60조(논문심사의 합격 등)

-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.
-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·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61조(논문심사위원회)

-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(단, 2인의 공동학위 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함),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(단, 2인의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으로 구성함)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단,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제62조(논문심사위원 위촉)

-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, 외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1명, 최대 2명까지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내부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단, 해당 학과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과 전임교원을 아래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- 1. 본교 유관 학과 및 학부 소속 전임교원
 - 2. 본교 타 대학원 및 부속기관(연구소, 산학협력단 포함) 소속 전임교원(동일 전공 분야에 한함)
- ④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, 연구기관, 경희학원 병설 기관(의료기관 등)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. 단, 해당 학과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외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- 1.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기관에 전임으로 재직하는 전문가
- ⑤ 제55조의 기위촉된 공동지도교수인 명예교수와 고향명예교수는 지도학생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⑥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4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